#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09년 3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## 1. 개정이유

○ 이장의 활동 및 임무는 증가되나 수당이 적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이장의 업무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이장의 상해보험 가입, 교육훈련,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, 체육행사 그 밖에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
나. 제명 띄어쓰기 등

## 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 :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관련사항 : 예산부서와 협의완료

다. 기 타

1).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명 “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, 제2조제1항 및 제2항,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,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,제5조 및 제6조 중 “리장”을 “이장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교육훈련 등 지원) 군수는 **이장**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**상해보험 가입,** 교육훈련,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, 체육행사 **그 밖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**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성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를 「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로 하고 제1조,제2조,제3조,제4조제1항,제5조 및제7조제1항 중 “리장”을 “이장”으로 한다.

②「성주군리장정수조례」를 「성주군 이장 정수조례」로 하고 제1조· 및 제2조 중 “리장”을 “이장”으로 한다.

## 신・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명 “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 | 제명 “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 |
|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**제1조(목적)** ……이장…… …… …… |
| **제2조(리장의 임무)** ①리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.<br>②리장은 리를 대표하며,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br>1~5 (생략) | **제2조(리장의 임무)** ①이장은 …… …… …….<br>②이장은 …… …….<br>1~5 (현행과 같음) |
| **제3조(복무)** ①리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,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.<br>②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.<br>③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・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.<br>④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・면장, 인수자,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 | **제3조(복무)** ①이장은 …… …… ……. ②이장 …… …… …….<br>③이장 …… …… …… …….<br>④이장…… …… …… …… …… …….<br>…… |
| **제4조(실비변상)** ①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, 월정수당은 읍・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<br>②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<br>③리장에게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 | **제4조(실비변상)** ①이장…… …… …… ……. ②이장…… …….<br>③이장…… …… …… …… …… …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5조(교육훈련 등 지원)** 군수는 리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,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, 체육대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| **제5조(교육훈련 등 지원)**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, 교육훈련,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, 체육대회 그 밖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|
| **제6조(편의제공)** 리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 | **제6조(편의제공)** 이장…… |